

의안번호	2215732
의 퇴 인	이학영의원
회 답 일	2026.2.9.
추계번호	25B7455
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8조의6 (산재보험 노무 제공자의 산재 보험 특례)	사업주의 소득(「소득세법」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한다), 사업장 별 노무제공자의 수,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재해율, 월 보수액, 산재보험료율 및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와 해당 사업주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음(제7항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48조의6 (산재보험 노무 제공자의 산재 보험 특례)	×	• 미첨부 －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－ 본문 참조

2. 상세 사유

- 현행법은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재해율, 월 보수액, 산재보험료를 및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¹⁾으로 정하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와 해당 사업주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²⁾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
- 개정안은 산재보험료를 감면하는 경우 사업주의 소득과 사업장 별 노무제공자의 수도 고려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,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의 수입이 감소할 수 있음
 - 다만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소득과 사업장 별 노무제공자의 수에 따른 보험료의 감면 기준 및 대상, 감면율 등이 확정되어야 하나, 현시점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재정소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음
 -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1)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6조의11(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감면) ① 법 제48조의6제7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와 해당 사업주"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와 해당 사업주를 말한다.

1. 산재보험료 감경 대상자: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」 제83조의5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종사하는 직종의 재해율(공단이 산재보험급여의 신청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재해율을 말하며, 그 재해율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직종이 속하는 업종의 재해율을 말한다)이 전체 업종의 평균재해율(고용노동부장관이 보험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공고한 것을 말한다)의 2분의 1 이상인 직종 중에서 산재보험료의 부담 수준, 노무제공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과 그 사람으로부터 노무 제공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
2. 산재보험료 면제 대상자: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사람. 다만,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」 제83조의5제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.

2)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6조의11(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감면)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감경 비율은 산재보험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남 희	예승우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남 희	02-6788-3737	nhee@nabo.go.kr